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89

발의연월일: 2025. 3. 24.

발 의 자: 박홍배·김태선·김한규

김주영・박 정・복기왕

박균택 • 이수진 • 서삼석

맹성규 · 박용갑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자원공사법」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사업지역 제한 등 국내 사업 여건상의 제한이 국내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국외사업 여건과 무관하게 해외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

그 예로 국내 공공기관 간 중복 기능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수자 원공사는 댐 상류의 하수도 운영·관리만 하도록 제한하였으나, 국외 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해외 하수도 분야는 물론 상하수도 통합사업 참여도 불가능한 상황임.

물산업조사기관 GWI에 따르면 세계 물 시장은 2022년 기준 약 1,28 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성장산업으로 향후 국내기업의 참여 확대가 기대되는 분야임. 그런데 최근 해외 물산업은 다수가 융복합 사업 형 대로 발주하는 추세로 국내 민간기업이 해외진출 시 자본 조달 및 현지 정부 협의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함.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분야에서 높은 대외신인도와 해외사업 경험 및 투자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 투자사업 추진에 적합하나 이러한 제한으로 참여가 불가능해 국내기업의 참여기회도 더불어 제한됨.

해외 하수도 사업의 경우에도 국외 사업 수주 시에는 국내 기관 간업무중복의 우려가 없어 제한이 불필요하며, 민간기업에서도 동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상황임.

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사업 시행 시 국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조항을 한국수자원공사가 국외에서 시행가능한 사업으로 규정하는 조항으로 개정하여 국내외 사업 여건에 따라 시행가능성을 구분하여 판단하고, 물 분야 해외진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9조).

법률 제 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공사는 국외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제1항 각 호의 사업
- 2. 댐 상류 및 그 이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
- 3. 공사가 개발·관리하지 아니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 ·관리사업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업) ① (생 략)	제9조(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② 공사는 국외에서 다음 각
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 및	
운영·관리할 때에는 공사가	
개발・관리하지 아니하는 수자	
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	
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u>1. 제1항 각 호의 사업</u>
	2. 댐 상류 및 그 이외의 지역
	에서 시행하는 하수도 시설
	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
	3. 공사가 개발・관리하지 아
	<u>니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u>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
	하여 시행하는 신ㆍ재생에너
	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관
	<u>리사업</u>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물관리 시설의 설치 및
	<u>운영·관리사업</u>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